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소관기관 및 부서 :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

2.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8월 17일, 김희수 의원 외 21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2023년 8월 30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김희수 의원

나. 제안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로 인한
주차 공간부족 갈등과 설치의무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급속충전시설 설치의무에 관한 예외 사항을 규정함.

다. 주요내용

○ 급속충전시설 설치의무 예외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충전시설 보급 및 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0조)

4.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성태)

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충전시설의 설치 의무 사항에 대하여 급속충전시설의 설치 예외를 규정하여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나. 주요내용

- 안 제9조에서는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규정하면서 총주차대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해야 하나, 예외 사항으로 상위법 시행일('22. 1. 28)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는 기 건축된 아파트 등에서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제기되는 주차공간 부족 문제¹⁾와 설치 의무자의 재정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9항 후단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 생략
 6.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7.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시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② 생략

- 안 제10조는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다. 종합의견

- 정부에서는 지난 2023년 6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 생활거점(주거지, 직장 등)에는 완속 충전기, 이동거점(고속도로 휴게소, 국도변 주유소)에는 급속 충전기를 집중 설치하도록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하였으며,
 - 전기용량이 부족한 노후아파트 등에서 완속 충전시설 설치가 용이하도록 일정 비율의 급속 충전기 설치 조례규정의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이러한 실태와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다면,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와 내용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